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46
----------	-------

발의연월일 : 2026. 9. 18.

발 의 자 : 주진우 · 고동진 · 박충권
안철수 · 신동욱 · 김승수
나경원 · 김태규 · 박형수
엄태영 · 김대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핵심 검증자료의 제출을 회피할 수 있고, 공직후보자가 선서 후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의 서면답변을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또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역시 일반 의결정족수만으로 채택할 수 있어 충분한 자료검증과 사실확인 없이 다수 의석만으로 인사청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명확히 자료제출 대상으로 하고, 개인정보 또는 정보주체의 부동의만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며, 공직후보자의 허위진술 및 허위 서면답변을 처벌하도록 함. 아울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인사청문의 실효성과 국회의 검증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공직후보자의 선서문에 허위 진술의 죄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함
(안 제7조제2항).
- 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 다.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 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간에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중지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및 제5항·제6항 신설).
- 라.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 또는 허위의 서면답변을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신설 등).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의2 및 제1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u>“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u> ③ ~ ⑦ (생략) 제10조(경과보고서)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u>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u>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제7조(위원의 질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 후보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u>“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허위 진술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u>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0조(경과보고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공직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관한 자료를 포

요구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함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이 완료될 때까지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중지된다.

⑥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해당 자료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정보주체가 자료의 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제16조의2(허위 진술의 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백은 국회가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

<신 설>

청문을 마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8조의2(고발) ① 위원회는 공직후보자가 제16조의2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6조의2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되어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가 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발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